

「子ども手当」の申請について [어린이 수당] 신청에 관해서

1 子ども手当は次のような場合に支給されます

1 어린이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子ども手当制度とは？

2010年4月から、日本国内に住民登録をしている方、又は外国人登録をしている方で、支給対象となる子どもを自らの収入により育てている方に手当が支給されます。

ただし、在留資格が「短期滞在」「興行」の場合、又は在留資格の無い場合は支給対象外です。

(1) 어린이 수당 제도란?

일본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2010년 4월부터 어린이 수당이 지급됩니다.

(2) 支給対象となる子ども

0歳から日本の中学校修了までに相当する年齢の子ども（15歳になった最初の3月31日まで）が対象になります。

(2) 지급대상이 되는 어린이

0세부터 일본의 중학교 수료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어린이 (15세가 된 후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3) 手当の金額

子ども1人につき 月額 13,000円が支給されます。

日本国内に住んでいる子どもだけではなく、海外に住んでいる子どもも対象となりますが、この場合には、2-(3)に記した証明等が別に必要になります。

(3) 수당 금액

어린이 한 명당 월 13,000 엔이 지급됩니다.

일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도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2-(3)에 기입되어 있는 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支給時期及び方法

毎年、年3回に分けて（6月、10月、2月）、前月までの4か月分の手当てがまとめて、子どもを養育している方名義の口座に振り込まれます。

2010年の6月の支給については、4月から制度が始まったため、4月と5月分の2か月分になります。

2010年の10月の支給については、9月30日までに申請すれば、4月～9月の分が受け取れます。9月30日までに申請しない場合は、申請した月の翌月分からの支給となり、4月分からの手当は受け取れ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

(4) 지급시기 및 방법

매년, 년 3 회에 나누어 (6 월, 10 월, 2 월) 지급되며, 1 회에 4 개월 분의 수당이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2010 년 6 월 지급 분의 경우에는, 4 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4 월과 5 월 즉 2 개월 분이 지급됩니다.

2010 년 10 월 지급에 관해서는, 9 월 30 일까지 신청하면 4 월~ 9 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월 30 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달의 그 다음달 분부터의 지급으로 되어 4 월분부터의 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子ども手当の支給を受けたい方は、申請が必要です

2 어린이 수당을 지급받으실 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1) 子ども手当の支給を受けるためには、申請が必要です。手当を受けたい方は「子ども手当認定請求書」に必要なことを記入して市区町村の申請窓口申請してください。市区町村が申請内容を確認し、認定した場合に手当が支給されます。

(但し、2010 年 3 月 31 日現在、児童手当を支給されていた方で、新たに子ども手当の対象となる子どもがない場合には、申請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が、6 月に現況届の提出が必要になります。)

(1) 어린이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당을 받으실 분은 [어린이 수당 인정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신 후 행정기관(시구청)의 창구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인정된 경우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2010 년 3 월 31 일 현재, 아동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의 경우, 추가로 대상이 되는 자녀분이 없는 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6 월에 현황신고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2) 申請する時に「子ども手当認定請求書」と一緒に提出するもの

- ・ 申請する人の外国人登録証の写し
- ・ 申請する人の健康保険証 (健康保険に入っている場合) の写し
- ・ 振り込み先の預金通帳の写し (申請者本人の口座に限ります)
- ・ その他、必要に応じて書類の提出を求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2) 신청 시 [어린이 수당 인정청구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

- ・ 신청자본인의 외국인 등록증의 복사
- ・ 신청자본인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 복사
- ・ 입금계좌용 통장의 복사 (신청자 본인의 계좌에 한함)
- ・ 그 외, 다른 서류의 제출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海外にいる子どもの手当を申請する方は、上記の書類に加えて、次の書類と確認が必要になります。

- ・ 「日本国外に居住する子どもに係る監護及び生計に関する申立書」 (申立書の様式は用

意されています)

- ・ 公的機関による出生証明書 (申請者と子どもとの続柄が証明できるもの)
- ・ 公的機関による居住証明書 (来日前、子どもが申立書を提出する養育者と同居していたことを証明できるもの)
- ・ 上記の申立書及び証明書には、日本に住む第三者による日本語の訳文をつける必要があります。
- ・ 年に2回以上子どもと面会していることを確認できるパスポートの出入国記録
- ・ 4か月に1度くらいの割合で、子どもの生活費や学資などを継続して送金していることを確認できる銀行の送金通知等

(3) 일본 국외에 있는 어린이의 수당을 신청하실 분은, 상기의 서류와 함께 아래의 서류의 첨부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일본 국외 어린이의 보호양육에 관한 보고서] (보고서의 양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 ・ 공적 기관에 의한 출생증명서 (신청자와 어린이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공적 기관에 의한 거주증명서 (방일 전, 어린이가 보고서를 제출한 양육자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상기의 신청서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제 3자의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1년에 2회 이상 어린이와 만나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여권의 출입국기록
- ・ 4 개월에 한번 정도 어린이의 생활비나 학비를 계속해서 송금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한 은행 송금통지서 등

(4) 4月1日より後に子どもが生まれた方や、日本に来日した方は、申請月の翌月分から支給されますので、出生あるいは来日後速やかに申請してください。

(4) 4월 1일 이후에 어린이가 태어났거나 일본에 오신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의 다음달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お願い

3 당부

次のような場合には手続きが必要です

- ・ 住所が変わったとき (他の市区町村に転居した場合、新しい住所の市区町村で、改めて子ども手当の申請が必要です。)
- ・ 本人又は、対象のお子さんが出国するとき
- ・ 子どもを養育しなくなったとき
- ・ 子どもと別居するとき
- ・ 出生や死亡などで、子ども手当支給の対象となる子どもの数が変わったとき
- ・ 振込先の口座を変更するとき (新しい振込先は、申請者本人の口座に限ります。)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 ・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새로운 주소의 관할행정기관에 어린이 수당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신청자 본인 또는 대상의 어린이가 출국 하는 경우

- 어린이의 양육을 하지 않게 된 경우
- 어린이와 별거하게 된 경우
- 출생 및 사망 등으로, 어린이 수당의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
- 입금구좌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입금구좌는 신청자 본인의 구좌에 한합니다.)

4 問い合わせ先 (申請窓口)

4 문의처 (신청창구)

문의·신청은 각 시읍면 사무소(市町村役場)에 부탁 드립니다. (통역은 없습니다.)